

세르비아 헌법재판소

국가개요

1. 국명 : 세르비아(Serbia)
2. 수도 : 베오그라드(Belgrade, 163만명)
3. 인구·면적 : 870만명(2021년) / 88,361km²(한반도의 1/3)
4. 공용어 : 세르비아어
5. 1인당 GDP : 7,149불(2019년)
6. 독립일 : 2006. 6. 5.(新유고연방-세르비아·몬테네그로-로부터)
7. 정부형태 및 의회 : 공화제, 의원내각제, 단원제

1. 명칭 : 헌법재판소

- The Constitutional Court of the Republic of Serbia

2. 연혁

- 1963. 4. 9. 세르비아(Socialist Republic of Serbia) 헌법에 따라 세르비아 헌법 재판소 설립
- 1963. 12. 25. 세르비아 헌법재판소법 제정 - 헌법재판소의 권한, 재판 및 그 결정의 효력에 관한 규정
- 1964. 2. 15. 세르비아 헌법재판소 활동 개시
- 1992. 4. 유고연방공화국(Federal Republic of Yugoslavia: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 2개 공화국으로 구성) 신 헌법 제정
- 2003. 2. 4. 세르비아·몬테네그로 국가연합 헌법채택
- 2004. 4. 7. 세르비아·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 설립
- 2006. 6. 5. 몬테네그로가 탈퇴한 세르비아·몬테네그로 국가연합 계승
- 2006. 9. 30. 세르비아 공화국(Republic of Serbia) 헌법 채택
- 2006. 11. 10. 세르비아 공화국 헌법 발효

- 2007. 11. 24. 헌법재판소법(Law on the Constitutional Court) 채택(2011년, 2013년, 2015년 5월 및 12월 개정)
- 2013. 11. 14. 현행 헌법재판소 규칙(Rules of Procedure of the Constitutional Court) 채택

3. 구성

-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장(President) 및 부소장(Deputy President) 포함 15인의 재판관(Justice)으로 구성
- 재판관의 임기는 9년으로 한번만 중임 가능
- 재판관은 5명씩 각각 국회, 대통령, 과거대법원에서 임명
- 헌법재판소장은 재판관 중에서 호선. 임기는 3년이며 중임 가능
- 재판관 자격 : 40세 이상의 15년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한 저명한 법률가

4. 권한

- 규범통제
 - 법률의 헌법,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, 비준된 국제조약에의 합치 여부 심판. 법률의 합헌성에 관한 사전통제와 사후통제 가능(헌법 제168조, 제169조)
 - 국제조약의 헌법에의 합치 여부 심판
 - 기타 일반법령의 법률에의 합치 여부 심판
 - 자치지역 및 지방정부 법령과 일반법령의 헌법 및 법률에의 합치 여부 심판
 - 공권력을 행사하는 조직, 정당, 노동조합, 시민단체의 법령, 단체협약(collective agreements)의 헌법 및 법률에의 합치 여부 심판
- 권한쟁의
 - 법원과 다른 국가기관 간의 권한쟁의심판
 - 중앙정부기관과 자치지역기관 또는 지방정부기관 간 권한쟁의심판
 - 자치지역이나 지방정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
- 자치지역과 지방정부의 보호
 - 자치지역 또는 지방정부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(자치지역 또는 지방정부가 청구)

- 자치지역 또는 지방정부 권한 침해 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법률 및 일반 명령의 합헌성(적법성) 심판(헌법재판소 직권으로 개시)

- 헌법적 질서의 폭력적 전복, 인권 침해, 인종·국가·종교에 대한 혐오를 목적으로 하는 정당, 노동조합, 시민사회단체의 활동 금지 심판
- 대통령의 헌법 위반 심판
- 법에 관할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선거소송
- 헌법소원 심판
- 기타 헌법에 규정된 사항

5. 심리 및 결정

- 헌법재판의 청구는 개인, 단체 및 국가기관이 하며, 헌법재판소가 직권으로도 위헌 여부 심사
- 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예비회의(preparatory meeting), 자문회의(consultative meeting) 등을 개최할 수 있음
- 예비회의는 헌법재판소장, 재판소회의의 의결, 재판관의 요청에 의하여 소집되며, 공청회(public hearing) 또는 자문회의(consultative meeting)의 필요성 및 그 참가자, 회의소집 시기 등을 결정
- 실무회의는 일주일 단위로 개최. 헌법재판소장, 재판소회의의 의결 또는 실무기구(working body)나 재판관의 요청에 의하여 소집
- 공청회는 합헌성(적법성) 심사, 선거소송, 정당·노동조합·시민단체·종교단체의 활동 금지 사건에 있어서는 필수적이나 법령사건에 있어서는 임의적임
- 필요한 경우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, 공무원, 학자 등을 소환하여 의견과 설명을 구할 수 있음
-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재판관의 다수결에 의하여 이루어짐. 단, 재판소 직권으로 개시한 법률의 합헌성(적법성) 심사에 관한 의결정족수는 재판관의 2/3
- 위헌으로 결정된 법령 및 기타 규정은 결정이 공고된 날부터 효력 상실
- 다수의견에 반대한 재판관은 회의시 구두로 반대의견이 있음을 밝히고 결정 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반대의견을 제출해야 하며, 반대의견은 결정문과 함께 관보에 게재되어 공고

- 일반법령의 위헌성 및 적법성 심사의 경우, 법령 및 기타 규정의 집행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야기할 위험이 있다면 해당 법령 및 규정에 대하여 집행정지 가처분을 내릴 수 있음

6. 기타사항

-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국회의원에 준하는 면책 특권을 누림
- 헌법재판소의 상설기구로서 편집위원회(Redaction Commission), 합헌성 및 적법성 집행 감시 위원회(Commission for Monitoring the Achieved Compliance with the Constitution and Law), 조직 및 재정문제 위원회(Organizational and Financial Affairs Commission)가 있음

7. 연락처

- 주소 : 15 Bulevar kralja Aleksandra st.
1120 Belgrade 35,
Republic of Serbia
- 전화번호 : +381 11 285 5000
- 홈페이지 : <http://www.ustavni.sud.rs/page/home/en-GB>

※ 출처 : <http://www.ustavni.sud.rs/page/home/en-GB>

(2021. 2. 작성)